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12. 19.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분장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광업등록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체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2명) 및 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

제26조의2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둔다.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형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동부광산안전사무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960”을 “954”로 하고, 일반직 계 “949”를 “9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95”를 “88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86”을 “3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6”을 “3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80”을 “374”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 및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 제2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9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4항관련)

1. 원전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원전수출협력과(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표준정책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1. (생략) <u><신 설></u> 32. (생략)	제23조(표준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1. (현행과 같음) 32. <u>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u> 33. (현행 제32호와 같음)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u>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u> 13. (생략) <u><신 설></u>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13.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① <u>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u>

를 둔다.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흥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

항

④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960</u>	<u>954</u>	-6
·	·	·	
·	·	·	
일반직 계	<u>949</u>	<u>943</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95</u>	<u>889</u>	-6
·	·	·	
·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86</u>	<u>380</u>	-6
일반직 계	<u>386</u>	<u>380</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80</u>	<u>374</u>	-6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